

제400회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정기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9월14일(수)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1)
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1)
3.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03)
4.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5)
5.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0)
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8)
7.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6)
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5)
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9)
10.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4)
1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4)
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2)
1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0)

상정된 안건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1) ... 2
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1) 2
3.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03) 2
4.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5) 2
5.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0) 2
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8) 2
7.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6) 2
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5) ... 2
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09) 2
10.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34) 2

1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14)	2
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2)	2
1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0)	2

(14시15분 개의)

○소위원장 이양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전 별로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속기록 작성 등을 위해 직위와 성함 등을 먼저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61)
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1)
3.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903)
4.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5)
5.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0)
6.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68)
7.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 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16)
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35)
9.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609)
10.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4034)
11.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014)
1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2)
13.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90)

○소위원장 이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모두 13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조사, 해양보호생물 관찰 활동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회유성 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 관찰·관광 시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교란해서는 아니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 등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이 미비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남방큰돌고래 등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와 개체 수를 보전하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관찰활동 제한 등을 위해 서식실태 조사의 범위에 해양보호생물을 추가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해양보호생물 방해·교란 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양보호생물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 등 처벌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은 부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안 제22조제2항 신설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의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수정의견은 다음 페이지 및 조문대비표에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별표의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해양생태계보전

부담금'으로 개정하는 등 다른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 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포 후 6개월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부칙에 경과조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차관입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구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이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 18페이지입니다.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배출규제해역,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선박에너지효율지수, 선박온항탄소집약도지수에 대한 정의를 개정·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해양오염에 관한 국제협약인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내용을 국내 이행법인 해양환경관리법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2조제14호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안 제2조제22호는 해양오염방지협약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측정대상에 신규 선박 외에 주요 개조를 거친 신선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에 개조도 포함될 수 있

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 제2조제23호 및 제24호는 법문의 정리 사항입니다.

다음, 2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자기록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0조의2는 국제해사기구(이하 '해사기구')는 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요구하는 기록에 대한 전자적인 형태의 기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 전자기록부 신규 도입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전자기록부 적합선언서는 해양오염방지협약 등에서 요구하는 전자기록부 설비 및 보안사항 등을 갖추었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증 또는 확인하는 것이므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로 용어의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받기 위한 검사 신청, 검사, 선언서 발급 등 개괄적인 절차를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관련 절차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선박에너지효율지수, 선박온항탄소집약도지수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허용값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및 허용값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며, 다만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의 보고 절차 등에 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아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1조의4는 선박소유자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확인받는 사항에 선박온항탄소집약도지수를 추가하고 검증확인서 의무비치기간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41조의5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대상 선박을 규정하고,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허용값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운항 또는 개조를 금지하며, 계산된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선박에너지효율지수 이하일 경우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해양오염방지협약에서 선박에너지효율지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대상은 각 선박 및 주요 개조를 거친 각 선박이므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41조의5제3항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허용값을 만족한다고 하면 선박 소유자가 불필요하게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선박에너지효율지수를 모두 계산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협약의 내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가 선박에너지효율지수의 허용값 이하일 경우 이를 선박에너지효율지수로 간주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1조의6은 선박 소유자는 매년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를 계산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가 허용값을 초과하는 경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 사항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에너지효율검사,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의 유효기간,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4조의2는 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에너지효율검사 대상에 선박에너지효율지수 계산 대상 선박 소유자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 안 제56조제4항은 현행법상 에너지효율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영구적임을 고려할 때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가 변경되는 선박 개조를 하는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에너지효율검사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안 제58조는 선박에너지효율이 선박에너지효율지수 및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의 허용값 등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수정·교체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배출규제해역 출입 시 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43조제4항은 현재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규제해역 출입 시 기관의 운전상태, 위치·일시 등을 기관일지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44조 및 제44조의2는 해양오염방지협약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연료유 전분 채취 장소 지정 및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업무의 대행 근거 및 과태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발급 업무,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와 허용값 및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을 검증한 결과의 국제해사기구 제출 등에 대한 업무대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현행법에서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고 있으므로 새롭게 도입된 전자기록부 관련 사항과 각종 지수 등의 제출 업무에 대한 업무대행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않거나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은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41조의4제4항에 따라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를 선박에 5년 이상 비치하도록 하므로 현행법 제132조제4항제6호의10 역시 해당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안 제30조의2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부칙의 시행일과 적용례에 관한 사항은 자구 정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전문위원 안대로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 4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출항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신고기관의 장이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어선의 출항뿐 아니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어선의 선장은 기상예비특보 또는 기상특보가 발표되거나 발효된 경우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에 따르도록 하며 조업제한을 위반하거나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어업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어업허가 등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상특보 발효 전 출항한 어선에 대하여도 조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조업 중인 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조업제한 조치의 실효성과 어선의 안전조치 및 준수사항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구명조끼 등의 의무착용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구명조끼 등의 착용 의무를 위반한 자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어선의 선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이러한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정부 입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 취지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상특보 발효 시에 어선의 출항을 제한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상특보 발효 이전에 이미 출항하여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업 조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승선인원이 2인 이하인 어선의 경우에는 어선 사고 시에 타인의 신속한 구조 지원이 어려워 사망, 실종 등 인명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실정입니다. 이에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기상특보 발효 시 기존의 출항 제한에 덧붙여서 조업도 제한하는 한편 소규모 어선에 대해서도 구명조끼, 구명의 등의 착용 의무화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마련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달곤 위원님 하시고.

○李達坤 위원 차관님, 앞부분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고요. 뒷부분이 과태료 300만 원인데 조항을 읽어 보면 구명조끼 등의 착용 의무를 위반한 자 그다음에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어선의 선장에게 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개인한테도 300만 원을 부과하고 선장한테도 300만 원을 부과하고, 이것 조금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위원님, 혹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선박의 안전 책임은 일차적으로 선장한테 있고 선장이 선원들한테, 특히 2인 이하의 선원한테 그것을 하계끔 의무를 지움으로 해 가지고……

○李達坤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면 선원에게도 부과하고 선장에게도 부과한다 이 말입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렇습니다.

○李達坤 위원 그러면 선원에게도 300만 원 부과하고 선장에게도 300만 원 이하 부과하고?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렇습니다. 선장이 좀 선원한테 그것을……

○李達坤 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제 이야기는 개인한테 부과하는 것하고 선원 전체를 통괄하는 선장한테 부과하는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싶어서요.

그 이전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없습니다.

○李達坤 위원 다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좀 참조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 처음에 300만 원이 아니고 1차, 2차, 3차까지 위반 사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위 밝히고 얘기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 죄송합니다. 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입니다.

○李達坤 위원 그러면 시행령에서 조금 손을 보십시오, 개인하고 선장은 다르니까.

○해양수산부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과태료를 매기되 차별을 두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안병길 위원님.

○안병길 위원 소형 어선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소형 어선 등록 수가 대략 얼마 정도지요, 2인 이하? 주로 낚시선이나 이런 게 되겠지요.

전체 6만 5000척이지요, 2020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그중에 한 3만 척 정도……

○안병길 위원 한 절반 정도?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절반 정도, 2t 미만이면 한 3만……

○안병길 위원 그런데 3만 척 정도가 되고 낚시객도 개년 엄청 늘어날 건데 이것을 현재 바다에서 구멍이나 구멍조끼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단속을?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사실은 그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것을 저희들은 해경이라든지 어업지도선이 수시로 가서 불시 검문하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조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겁니다.

○안병길 위원 겁주는 효과 정도인데……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배를 타면 이제는 2인 이하는 구멍조끼 같은 것을 무조건 입고 타야 되잖아

요. 그렇지요? 사실 좀 되게 불편해요, 관광선이나 낚시선 이게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입는 걸 일일이 다 확인을 못 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어찌 보면 법 자체가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끼를 착용하면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는 그런 어떤…… 요즘 구멍조끼나 구멍의도 첨단 스마트 구멍조끼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좀 신경을 쓰서 가지고 착용을 하면 자동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를 해야 이 법 조항이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해수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다른 분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이달곤 위원님과 안병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행령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 54페이지와 55페이지는 현행법 대비 개정안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첫 번째 안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도서지역에 연륙된 지 10년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고 어선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위성곤 의원님 안은 영세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고, 이양수 의원님 두 번째 안은 어선원 직접지불제도 및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수산업 및 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어촌소멸 위기 대응 등 어촌사회의 기능 유지 및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접 지불제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인정됩니다.

먼저 조건불리지역 지급 대상에 연륙된 지 10년 이내의 도서지역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지역 지급 대상자에 어선원을 추가하는 내용은 해양수산부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어선원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하는 이양수 의원님 두 번째 안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영세어가 또는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 신설과 관련하여 위성곤 의원님 안과 이양수 의원님 안의 취지가 유사한데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또한 해양수산부 등의 의견을 고려할 때 이양수 의원님 두 번째 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안은 직불제 대상으로 소규모어가, 어선원을 규정하고 신청 및 지급 절차, 지급액 산정 기준, 그 밖의 어선원·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정의,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 제한, 벌칙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확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어촌계 인가를 받은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어촌계의 어촌계원은 어촌계 인가 시점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을 추가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서를 제출받고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를 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변경하며, 안 부칙 제2조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어촌계원 자격 유지기간을 5년으로 한시적으로 낮추고 신청자 연령조건을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에서 만 80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 경영이양직불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어촌계의 계원은 어촌계 인가 시점부터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보유한 신규 어촌계의 계원에게도 동 개정 내용이 적용되는바 활성화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며, 특별자치도지사 등으로 행정 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어업인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시행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이양수 의원님 두 번째 안과 같이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또한 정점식 의원님 안의 부칙 제2조 및 3조는 특례 및 일반적인 경과 조치이므로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국정과제인 소규모어가와 어선원까지 직불금을 확대하기 위해서 수산공익직불제 개편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였고 2023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4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하면서, 내년부터 직불금 수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새로운 수산공익직불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위법령 개정 일정을 고려해서 정점식 의원님 안의 시행일을 2023년도 4월 1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곤 위원님.

○李達坤 위원 차관님 말씀처럼 이 직불제의 기본형이 수산 부분에도 갖추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농업 부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산업 부분에 소홀했었는데 제도를 같이 갖추어가고 또 소규모어가라든지 어선원이라든지……

조건불리지역은 많지는 않지요,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렇습니다.

○李達坤 위원 그런 것 다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이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또 다른 의견 주실 분.

○윤재갑 위원 차관님, 56페이지의 대체토론 및 검토의견을 보면 연륙된 지 10년 이내의 도서지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기재부의 동의를 받아 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이번에 연륙된 지 10년 미만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내년도 예산안뿐만 아니고 이 법률 개정안에서도 그걸 제외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생각인데…… 그러면서 기본형으로 소규모어가가 이번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규모어가가 포함되면 연륙된 지 10년 미만된 그 부분이 상당히 흡수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의견을 같이 고려해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00%는 다 조사를 못 해 보고요, 여수시 관할 부분은 해당되는 섬이 6개 있는데 그 쪽 부분을 먼저 일차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80% 정도는 소규모어가에서 다 수용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제도를 안착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차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재갑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이 조항은 살아 있지만 소규모어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 기재부를 설득을 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철현 위원** 저도 좀……

○**소위원장 이양수**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소규모 어선은 부부 사이라든지 부자지간 이렇게 가족끼리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개정안에 의하면 가족들은 지불이 안 되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제3자를 고용해서 하게 되면 지불이 되는 경우인데 이것 좀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보기에는 편법이나 탈법이 판을 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또 편법·탈법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 부분은 집행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편법·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원래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자 하는 걸 실제 수산업의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시

군구에서 하게끔 이번 개정안에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수산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함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탈법·편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차관님, 오히려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소규모 어선에서 가족끼리 하던 것을 이제는 보상금을 목적으로 가족은 놀라고 그리고 제3자를 데려다가 쓰는, 이런 불필요한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것인지 좀 고민이 많은데……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 과정에서 가족분들까지 이렇게 해 버리면…… 제도의 당초 취지가 선장 이외의 다른 고용인인 선원들의 낮은 소득 수준이라든지 또 어로기술에 대한 전승 이런 부분이 현재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어선원들의 복지와 어로기술의 전승 이런 관점에서, 어선원에 대해서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는데요.

지적해 주신 부분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개정안에 대해 통과시켜 주시면 향후에 그런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 소위 심사자료 II권, 2페이지입니다.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항명령에 대한 근거 마련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관리청은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 다른 구역으로 피항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태풍 상륙 시 항만관리청은 각 지방청별 선박대피협의회를 통해 피항명령을 하고 있으나 명령에 불응한 선박 수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선박의 안전 확보 및 피항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피항명령 및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함께 피항명령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8조의2제2항에서는 피항명령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관리청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해양수산부령을 대통령령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위험물 관련 자료 요청 근거 마련입니다.

개정안은 관리청이 위험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는 미신고 위험물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35조의2제1항 전단 중 ‘필요한 자료’를 ‘위험물 및 위험물을 수입하는 선박의 입항일 등 필요한 자료’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길 위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안병길 위원님.

○안병길 위원 보통은 피항명령을 받고 선박이 피항을 안 했을 때의 이야기인데…… 2019년 사례인데 여기 보면 피항명령을 받고 피항을 하려고 하는데 남해해경에서, 마산해상관제센터에서 입항을 거부해 가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9월 달입

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주로 무동력 바지선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인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항하러 오면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피항하러 왔는데 해경에서 이것을 거부했다. 실제 이게 정확하게 기사가 나서, 사실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차관님, 혹시 이런 사례를 들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저는 그 사례는 처음 듣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 피항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법령에 근거되어 있지 않고 풍수해 재난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법률에 옮기게 되면, 법률로 제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 들어가게 되면 그런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지도·단속을 통해서라도, 협조를 통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지도·단속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해경이나 이런 쪽에서 피항을 거부했다 이러면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박도 피항명령 받고 안 가면 처벌받는데.

해경이 이런 쪽에서 귀찮고 예인선이 따라붙어야 되고 또 들어와 있으면 혹시 사고 날지 모르니까 ‘다른 데로 가시오’, ‘우리 항에는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좀 문전박대를 할 수 있거든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경……

○안병길 위원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현장에서.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알겠습니다. 해경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그 부분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다른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형법 등 위반으로 징역형 이상 확정 시 해기사 면허 결격 및 취소사유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9조는 외국인 선원, 승선근무예비역, 실습 선원 등 선박 내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기본권 보호 및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폭행, 성추행 등을 일으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해기사에 대하여 위성곤 의원님 안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주철현 의원님 안은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의 취지가 징역형 이상의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형사범을 원천적으로 해당 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임을 감안해 볼 때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취소 시 적용되는 결격사유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주철현 의원님 안 제6조의2에서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안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하여 선고토록 하고 있는데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형법 제38조의 가중주의에 의하여 다른 죄와 합해진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해기사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을 높게 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해기사 면허취소 등의 처분 부과 시점을 명확히 하고 성폭력 범죄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과 부합되게 하기 위하여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해기사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추가입니다.

개정안은 해기사의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현행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이며, 다만 개정안 제9조제1항제8호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구 등을 수정하고 부칙에서 시행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해기사 현장실습 내실화를 위한 교육기관의 책임 부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해기사 양성 지정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사전교육, 현장실습관리 등 안전관리를 실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정교육기관에서는 고등학교, 대학교 등 사회경험이 없고 적극적인 권리 주장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승선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지정교육기관의 장에게 학생에 대한 보호 책임을 부여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관리를 도모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제21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은 현행법 제21조제2항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개정안 제21조의3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지침’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부칙은 주철현 의원님 안을 기준으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일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1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이상 2건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연수 26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한자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를 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994년 12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기존 업종별 수협에만 신용사업을 허용하고 새로 설립된 업종별 수협은 신용사업을 할 수 없는데, 그 이후 설립된 업종별 수협으로는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이 유일합니다. 이와 같이 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의 조합원은 조합으로부터 필요한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형평성 논란 발생 우려가 있어 자기자본 및 건전성 등 기준을 충족하는 업종별 수협에 대해서는 신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들이 필요한 자금을 보다 편리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유사 입법례로 농업협동조합법에서도 2011년 부칙 개정으로 품목조합의 신용사업 수행에 관한 특례를 둔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정부 측 입장 얘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의안 번호 12번 서삼석 의원님 안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남 서부 지역이면 어디, 어디예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해남, 진도, 완도……

○윤재갑 위원 완도, 해남, 진도, 신안 이런 쪽입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해남, 진도, 신안……

○안병길 위원 뭐 양식하는 겁니까? 전복?

○윤재갑 위원 어류. 그러니까 광어 이런……

(「어류 양식」 하는 이 있음)

○소위원장 이양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연수 위원장님, 다음……

○소위원장 이양수 다음 또 있네요.

○전문위원 정연수 다음 30페이지, 의사일정 제 13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은 중앙회 회장 선출은 조합장 선출일부터 1년 후에 실시하도록 하면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출되는 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연임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하되 현 회장의 임기는 다음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전날에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2021년 소위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주요 내용은 첫째, 회장 선출 시기 조정과 관련해서는 회장 선출을 조합장 선출일 이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한다는 의견과 회장 선출 시기 조정이 불필요하며 선거권을 가진 현임 조합장 의견 수렴 후 정부 차원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고, 해양수산부는 신임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나 현임 조합장들의 선거권이 없어지므로 현임 조합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회장 선출 시기를 조합장 선출 후 1년 후에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회장 선거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1년의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며 해양수산부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둘째, 재·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와 연임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것에 대해 수협중앙회장만 잔여 임기 재직조항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과 잔여 임기가 짧은 경우에 한하여 연임 허용 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 선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보궐선거로 선출되는 회장에 한하여 1회 연임 허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타 조합과의 형평성 고려 시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잔여 임기가 짧은 경우 2년 미만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연임 허용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며 해양수산부는 연임 인정 시 농협 등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연임 인정 여부 또는 임기가 1년 이하 남은 경우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셋째, 현 회장의 임기 연장 여부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현 회장의 임기가 1년 동안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한 해양수산부의 의견 수렴 결과입니다.

중앙회장 선출 시기 조정과 관련해서는 65.8%가 찬성하였으며, 다만 현직 조합장은 60.9%가 반대하였습니다.

중앙회장 선출 시기는 중앙회장 선출 시기 조정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69.8%가 조합장 선출 3~6개월 후 회장 선출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의견입니다.

중앙회장 선출 시기 조정과 관련해서는 의견 수렴 결과 현직 조합장의 다수가 선거 시기 조정에 반대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잔여 임기 및 1회 연임과 관련해서는 회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다시 1회 연임을 허용하게 되면 연임을 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되 연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재·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중앙회장 선출 관련 사항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다만 선거권을 가진 현직 조합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다수가, 한 60% 정도가 선거 시기 조정에 반대하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재·보궐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연임 허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률이 연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농협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갑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현직 조합장들은 자기 자신이 중앙회장 선출권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비상임이사, 어촌계장이…… 중합된 내용을 방금 보니까 찬성이 65.8% 반대가 34.2%, 전체적으로는 중앙회장 선출 시기를

조정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합장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 조합장들은 자기 권리를 놓고 싶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주철현 위원 차관님, 저도 윤재갑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중앙회장을 뽑는 것이 퇴직하는, 퇴임하는, 그만두는 조합장들이 뽑고 그만두 버리면 안 되잖아요. 4년 동안 같이 일할 중앙회장을 신임 조합장들이 뽑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만두는 조합장들이 뽑고 그만두 버리면 도대체 새로 선임된 중앙회장은 누구하고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해수부가 현직 조합장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이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말을 좀 바꾸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색이 조합장들이 조합을 대표해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건데, 그러는 건데 조합원들 뜻이 중요한 것이지…… 바뀌는 새 조합장이 더 중요한 것이지 과거 조합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게 보면 해수부에서 선거 시기 조정을 새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뽑게 하는 게 맞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의견을 바꾸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를 들면 저희들도 조합장과 비상임이사, 어촌계장 이렇게 통합해서 했을 때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이 나오고 대신에 실제로 선거권을 가진 조합장들의 의견을 볼 때는 또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기능 조정을 맞추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또 조합이라는 게 조합의 어떤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합 다수의 어떤 의견도 저희들이 또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차관님, 지금 전체 조합원들의 뜻은 거의 70% 가까이가 신임 조합장들이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조합장들이 당선이 될 것 같습니까? 다음에 당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차관님이 이 부분은 양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신임 조합장들의 임기가 내년 3월 21일 날, 3월 8일 날 선

거가 있고 3월 21일 날 시작이 되더라고요. 중앙회장 임기가 3월 26일 날 끝나요. 그러니까 신임 조합장들이 중앙회장 선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막 조합장 취임해 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중앙회장 선거로 오라, 어찌라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2~3개월 있다가 중앙회장을 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직무대행 체제로 하고 중앙회장 임기 시작 시기를 늦추는 게 어떻겠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

○주철현 위원 만약에 신임 조합장들이 새 중앙회장을 뽑는다면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3월 21일 임기가 시작되고 중앙회장은 3월 27일부터 임기가 시작됩니다. 딱 6일 남아 있는데 6일 안에 선거를 하기가 촉박하니까 한 3개월 정도 공백 기간을 두고…… 그 사이에 신임 조합장 상대로 선거운동도 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후보자들이? 그 정도 공백 기간을 두고 새 중앙회장은 3개월 뒤에 임기가 시작되게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제도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주철현 위원 아니, 차관님, 내년 3월 8일이 선거예요. 오늘 결정 안 해 주면 큰일납니다. 3월 8일이 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결정을 해서 오늘 결단을, 선거 틀은 잡아 줘야지 6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언제 다음에 신중히 결정합니까?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요. 이 자리에서 끝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임 조합장들이 뽑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수 수산인들이 동의하니까 그것은 동의를 해주시고, 뽑는다면 6일 내에 선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3개월 공백 기간을 두고 뽑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자꾸 ‘신중’ ‘신중’ 하지 마시고,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단을 내려 주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이달곤 위원님 그리고 안병길 위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李達坤 위원 약간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율 조직 중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이 조합이라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이 조합의 의사결정, 특히 조합의 조합장을 선택한다든지 하는 이 시스템 문제 여기는 전반적으로 자율과 자치가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법률에서 전체적으로 국가를 움직여 나가야 되니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선거가 다가왔을 때는 손을 안 대는 것이 그분들의, 구성원들의 오래된 전통과 자율이라는 취지를 우리가 담아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법을 만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자율 조직의 시스템 정하는 문제를 자꾸 개입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자치나 자율 조직은 상당히 제약을 많이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 눈으로 보면 불합리한 점이 많을지 몰라도……

우리 어촌계가 만들어진 역사가 어느 정도 되지요? 수백 년 되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그렇습니다.

○李達坤 위원 그렇지요.

수산업중앙회는 몇 년 됐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한 60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達坤 위원 60년을 넘게 했지요, 60년.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서 정부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견해는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올 때 이런 자율·자치 조직을 법적으로 자꾸 규제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안병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병길 위원 중앙회장 선출 시기 조정하는 문제가 처음에 조합에서 안 나왔나요, 이게? 이 문제가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선출 시기가 뒤바뀌어서 조합장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되기 때문에 선출 시기를 다른, 농협과 같이 조합장을 먼저 선출하고 그다음에 중앙회장을 선출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처음에 이 문제가 선출 시기를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 안 나왔습니까? 맞지요?

○소위원장 이양수 수협중앙회에서 서봉춘 부대표 나와 계시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부대표 서봉춘 예.

○소위원장 이양수 궁금하신 것 물어보겠습니다.

○안병길 위원 수협중앙회에서 처음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부대표 서봉춘 예, 맞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하니까 조합장님들은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한다. 그러면 조합장님들만 빼고, 조합장님들은 여전히…… 현직 조합장님들만 그럴 거예요. 이분들이 아마 조합장 끝나고 나면 또 견해가 바뀔 수도 있어요.

현직 조합장님들은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전체 조합원이나, 여기에 어촌계장님들 의견을 집약해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면 조합원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대변하고 있는 어촌계장님들의 의견 다수가 선출 시기를 조정하는 게 맞다면 조합의 다수 의사는 선출 시기를 조정하는 게 맞다, 그게 예전의 수협중앙회의 입장이었고 지금도 그 입장이 맞는 것 아닙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부대표 서봉춘 예, 맞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현재 조합장님 반대가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부대표 서봉춘 이게 통계,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보고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아마 해수부도 비슷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떤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면 일반적으로는 찬성을 하면 의견을 안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저희들은 그분이 의견을 안 줬기 때문에 법률 개정안을 찬성하는 걸로 의견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직 조합장님들—조합원들은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고요—입장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의견을 안 주시는 조합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찬성한다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안병길 위원 아니,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부대표 서봉춘 65개 조합이……

○안병길 위원 그래서 이 문제 선출 시기를 조

정해야 된다는 의견 자체가 조합에서 처음에 나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의견은 맞는데 단지 현직 조합장만 반대 의견이 높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합의 다수 의사는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른, 농협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1년 뒤 이래 가지고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다른 곳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왜 수협만 정리가 안 되어 있냐, 뒤바뀌어 있냐?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바꾸어다오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직 조합장님들이 반대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직 조합장들이 조합원들의 다수 의견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현재로서는 중요는 하지요, 지금 투표권이 있으니까.

들어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선출한다면 얼마 정도 뒤에 할 거냐? 조사 결과를 보면 70%가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3개월이 35% 또 6개월이 35%. 거의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99명의 조합장님이 이 선출 공고하고 선거운동 하는 데 한 달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어요. 맞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부대표 서봉춘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 공고해서 선출까지 한 달 정도 하면 행정적인 절차는 충분하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부대표 서봉춘 예, 그렇습니다.

○안병길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굳이 왜 1년 이야기가 나왔냐? 현재 농협에서 1년 뒤에 하기 때문에 1년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농협을 따라가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합장님들이 선출되고 나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3개월이든 2개월이든 빠른 시일 안에 후임 회장을 선출하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공백을 어떻게 할 거냐? 공백이 2개월이 생기면 3개월이 생기면 그 공백 기간은 현행 중앙회 회장님 임기를 연장할 거냐 아니면…… 또 이런 방법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무대행이나 이런 순서가 아마 있을 거거든요, 회장의 유고 시에. 유고라고 해야 됩니까, 궐위라고 해야 됩니까? 회장의……

○**李達坤** 위원 임기가 끝나는 거지요, 이제.

○**안병길** 위원 임기 종료 시 회장이 없을 경우에 직무대행이나 이런 것을 해도 선거 기간 동안에 3개월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장기간이 된다면 중앙회 업무 공백 때문에 힘들다 할 수 있을지라도 3개월 정도는 직무대행이나 이런 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발언하는 김에 제 의견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 임기로 하고 연임할 수 없도록 한다 그것은 지난번에 농협과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1회 연임 자체는 불가하다 그런 의견을 제가 냈었는데 보궐선거로 되는 분들에 대한 연임 이것은 한번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게 그게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철현** 위원 차관님, 지금 수협 단위조합장들은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이면 선거 안 치르게 되어 있잖아요, 관련 법에 의해서. 중앙회장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국장님, 그러신가요, 어떤가요? 선관위에 위탁하는 공공기관 위탁법에 의해서 그런 규정이 있잖아요?

○**소위원장 이양수** 수협중앙회 서봉춘 부대표 말씀해 보세요.

○**주철현**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부대표 서봉춘** 지금 현재 중앙회장 선거는 보궐제도가 아니고, 임기가 시작되면 그 이후에 4년이기 때문에 보궐제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유고……

○**주철현** 위원 단위조합장들은 있는데 중앙회장은 없다 이거지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부대표 서봉춘**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부대표 서봉춘**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 근거 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부대표 서봉춘** 저희 수협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선관위원회에 위탁하는 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을 텐데 그것 보셨어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부대표 서봉춘**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은 선거일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동시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위탁을 하게 됩니다.

○**주철현** 위원 위원장님, 저희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들었고 논의를 지난번에 해 왔는데요.

하여튼간 전체 수산인들 다수의 뜻은, 제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마는 수산인들이, 수협 어촌계원들이 직선제라고 봅니다. 직선제가 절대 다수의 의견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직 조합장들이 직선제를 반대하는 형편이고 나머지 어촌계원들은 찬성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직 조합장들은 본인들이 임기 끝나는 마당에 중앙회장 뽑고 가고 싶겠지요. 하지만 전체 수산인들의 뜻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수산인들의 뜻에 맞게 신임 조합장들이 새 중앙회장을 뽑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개월 이내에 신임 조합장이 중앙회장을 뽑게 이렇게 해 주고.

다만 저도 여수시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임기 4년 내 단체장, 선출직이 너무 짧습니다. 뜻을 펼칠 만하면 임기가 만료돼 버려서 일다운 일을 제대로 못 하는데, 중앙회도 빛을 다 청산하고 관리체제에서 벗어났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수협중앙회장을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에 한해서 한 번 연임할 수 있게, 최대한 8년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다만 현직 회장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그렇게 제도 개선을 해서 이 자리에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닥을 안 잡아 주게 되면 이게 또다시 4년이 지나가야 됩니다. 많은 조합장들이나 수산인들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법을 정비해 주길 바라고 계시니까 정부에서 일부 약간 의의가 있긴 하지만 국회에서 책임을 지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오늘 법안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어기구 위원님.

○**어기구** 위원 저도 존경하는 이달곤 위원님의 선거 전에 물을 바꾸는 것 옳지 않다는 말씀도 동의하지만 그동안, 이게 어제오늘 논의가 아니잖아요. 충분히 논의가 됐고 이제 결정하는 것만 남은 것 같은데 주철현 위원님이나 안병길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선출 시기도 조정을 하고 주철현 위원님 말씀대로 연임 등등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시기 조정하고, 선출 시기하고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 이번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그래도 이것 중요한 문제니까 한 분씩 다 의견을 말씀해 보시지요.

○위성곤 위원 저도 관련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연임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회장이 연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연임과 관련해서는 차기에 적용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법안 논의가 늘어져서 다음 회장이 되고 나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또 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회장이 차기 회장이 되기 전에 연임 문제는 정리를 해 주는 게 옳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이든, 아니면 연임 문제가 지금 법안 상정이 안 돼 있다면 다음 회의에라도 해서 연임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앙회장의 선거와 단위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 시기가 중앙회장이 우선 선출되게 되어짐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조합장님들이나 중앙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서 논의를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중앙회장의 선출 시기를 지금보다 한 3개월 정도 뒤로 늦춰서 신임 조합장들이 중앙회장을 선출하게 하고요. 그것을 직무대행 체제로 가도 된다고 생각되어지고, 아니면 지금 중앙회장이 한 3개월 정도 임기를 더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그러면 대략 의견 개진을 하신 것 같은데……

○李達坤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소위원장 이양수 예.

○李達坤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협동조합중앙회를 하는 것이 농협이 또 따로 있지요, 그렇지요?

○안병길 위원 산림조합.

○李達坤 위원 산림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차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같은 논리를 가진다면 3개가 유사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가급적이면 유사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李達坤 위원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예.

○李達坤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중대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임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일의 성질도 중요하지만 그 조합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회장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의, 재량 범위가 넓으면, 크면 우리나라 선거풍토에서 연임이 어렵지요. 그래서 아마 농협은 단임으로 해 냈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그렇습니다.

○李達坤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재량의 범위가 적고 조직이 상당히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임을 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일 우리가 연임을 수산업 분야에서 한다면 농업 부분에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결정은 수산업 부분에만 미치는 건 아니겠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대행 문제인데, 지금 수산업중앙회는 대행을 하게 되면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지도대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達坤 위원 예?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대표이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쉼시에는 대표이사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그렇게 대행을 하는 게……

○李達坤 위원 회장이 임기가 끝나면 대표이사가 하고, 순서가 있다 이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하고 그다음에 쉼시가 되면 상임이사부터 비상임이사로……

○李達坤 위원 그 대표는 임기가 보통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상근 2년입니다.

○李達坤 위원 그 사람은 언제 임기가 끝납니까, 지금 있는 대표이사?

○윤재갑 위원 수협에서 나온 사람이 얘기해 봐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부대표 서봉춘 내년도 8월 달에……

○李達坤 위원 내년 8월에 끝난다?

알겠습니다.

○윤재갑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수협중앙회장 연임 관련된 안

건은 상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사항도 여기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주철현 위원 아니,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면 되니까요. 어차피 수협중앙회 선거제도와 관련한 거니까……

○소위원장 이양수 위원회 대안으로 법을 다 만들면 되니까……

○윤재갑 위원 대안으로?

○주철현 위원 예,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윤재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내년 3월에 중앙회장 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결정해 주지 않으면 상당한 혼선이 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전체 수협 조합원들의 의견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직 조합장 말고는 대체로 시기를 조정해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회장 선출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중앙회장 임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해서 상정하는 것을 제안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이제 의견들은 각자 다들 어느 정도 개진을 하셨습니다. 공통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 자리에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대략의 합의안을 만들어 놓고 최종 결심하는 회의는 다음번으로 한번 미루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합의를 가져갈 수 있는 데까지는 가져가 보시고 그리고 통과시킬 수 있으면 통과시키고 아니면 다음번에 한 번 더 신중하게 의논하는 걸로…… 그러면 일단 논의를 지속해 보시지요.

지금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는 현직 조합장이 뽑는 것보다는 당선된 신임 조합장님이 뽑는 게 좋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그러면 신임 조합장님이 뽑는 것.

기간이 법안에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3개월 이야기가 나오셨기도 했고 또 한 달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기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3월 29일 날 신임 조합장들 임

기가 시작되고요.

○주철현 위원 3월 21일 날 시작돼요.

○소위원장 이양수 3월 21일 날 신임 조합장들 임기가 시작되고 3월 26일 날 중앙회장의 임기가 끝나는데 이것을 4월 26일이나 5월 26일이나 6월 26일이나, 몇 개월 정도로 하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여기구 위원 3개월.

○윤재갑 위원 한 3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철현 위원 3개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3개월이면 신임 조합장들이 취임해서 가지고 업무 파악하시고, 선거운동 기간 주고. 그러면 기간은 3개월이고.

현재 중앙회장의 임기를 3개월 연장해 주는 게 옳으냐, 아니면 임기가 끝났으니까 종료시키고 직무대행, 즉 수협 대표가 3개월간 직무대행하는 게 옳으냐 이 두 가지 중에는 어느 겁니까?

○여기구 위원 직무대행. 아까 이달곤 위원님……

○소위원장 이양수 직무대행, 현 회장의 임기 연장보다는 직무대행 체제로 3개월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여기구 위원 예.

○소위원장 이양수 그리고 임기가 지금 4년 단임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임으로 바꿔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는 농협이라든가 다른 협동조합중앙회들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다고 보시는 게 좋을까요?

○안병길 위원 다른 것하고 맞춰야……

○주철현 위원 차제에 바꿔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구 위원 연임, 연임으로.

○李達坤 위원 하려면 다 맞춰야지.

○윤재갑 위원 그런데 맞추자는 데 동의는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4년 단임은 업무 추진하는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로 다음 회장부터 중임을 허용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다른 위원회 하는 것 보고 우리가 결정하자 하는 건 논리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물론 현 회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다음 분에 한해서, 다음 분부터 중임을 허용하자는 안인데 이것을 우리가 단독으로 수협의 협동조합에만 적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 위원회에서 다른 협동조합들과의 관

제도 고려해서 한꺼번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인지 그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안병길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양수** 예, 안병길 위원님.

○**안병길 위원** 지금 제가 확인하니까 농협이나 다른 조합에도 임기 연장 법안이 올라와 있답니다.

○**李達坤 위원** 예, 그렇지요. 올라와 있어요. 운동하고 야단났지요, 지금.

○**안병길 위원** 올라와 있으니까, 다 그것 우리 농해수위가 소관 상임위원회니까 농림법안소위하고 다 같이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시지요, 그 부분의 연임 문제는.

○**소위원장 이양수** 그러면 연임 부분은 다른 협동조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의견을 구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오늘은 보류를 하는 걸로……

○**주철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농협중앙회장은 임기가 앞으로 2년이 더 남았습니다. 거기에는 여유가 좀 있어요. 또 농협중앙회는 우리나라의 10대 재벌그룹에 들어갈 정도로 덩치가 큼니다. 수협은 농협의 10분의 1도 안 되고 농협에 비하면 구멍가게나 마찬가지로 같은 차원에서 놓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차제에 수협중앙회장의 선거제도를 바꾸는 마당에 연임도 같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 결정하게 되면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추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농협이나 산림조합도 따라서 참고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나는 봅니다.

○**여기구 위원** 저도 주철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다른 데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면 된다고 보고요. 주철현 위원님 말씀에 백번 동의합니다. 여기서도 그 문제를 정리해 가지고……

○**소위원장 이양수** 동의를 나왔습니다.

반대되는 의견 있으십니까?

○**안병길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 부분이 아직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연임 여부는. 보궐로 당선되는 분만 연임을 해 주자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선거를 안 하니까요.

예를 들어 당선되고 나서 바로 보궐이 있다든지 이런 분은 만 3년도 못 채우니까 그것은 저는

충분히 연임 이야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보궐과 상관없이 다 연임을 해 주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성곤 위원** 농협중앙회는 농협중앙회대로의 문제가 있고 또 수협은 수협대로의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 의견은 오늘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어도 우리가 정기국회 내…… 어쨌든 간에 다음 법안소위에서 이 문제는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연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결정을 내려 주는 것이 맞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순연을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결정은 우리가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재갑 위원** 우리 해양법안소위에서 그것 안을 올리면 어차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부쳐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수협중앙회장의 다음 선거가 임박해 온다는 점 그다음에 오늘 이 정도 충분히 논의가 된 점 그런 걸 고려하면 해양법안소위 안으로 해서 올려서 전체 농해수위에서 한번 논의를 해 가지고 통과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오늘 결정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이양수** 그런데 결정을 하고 싶은데 안이 모아져야 결정이 되는 거니까……

○**윤재갑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이양수** 지금 안이 모아지지, 중임에 관해서는 지금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윤재갑 위원** 그런데 안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여 임기 보궐선거 부분은 수협중앙회장 보궐선거 없다고 아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철현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새로 규정을 하나 넣으면 됩니다. 그건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거니까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윤재갑 위원** 아니, 그건 그렇고……

○**안병길 위원** 현재는 없지만 이게 임기가 4년이고 동시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궐선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시스템이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야 돼요.

○**소위원장 이양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임기 4년으로 하고 중임을 허용하는 제도로 가면 보궐선거 규정도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현재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보궐선거를 해서 그 보궐선거로 들어간 사람이

한 번에 한해서 중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요.
이게 같이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요 안에 대해서 지금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한 차례 더 논의하시지요.

○소위원장 이양수 제 생각에는……

○주철현 위원 그러시면 아까 3개 합의는 그
렇게 하고 마지막 연임 여부만 다음 회의 때, 다음
회의를 가급적 빨리 열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일주일 내에 열든지 해서 빨리 결정을 보십시
다.

○소위원장 이양수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신임
조합장이 뽑는다는 것, 기간은 3개월로 한다는
것 그리고 직무대행이 한다는 것은 오늘 통과시
킬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건 통과시키고.

그리고 임기 4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와 보궐선
거 조항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할까요?

(「그러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이상 2건의 법률안
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
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 의원실 및 위원회 그리고 사무처 직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부

차	관	송	상	근
정	책	김	혜	정
수	산	최	용	석
어	업	최	현	호
수	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부	대	서	봉	춘
기	획	신	황	용
조	정			
실	장			

○출석 위원(7인)

안 병 길 어 기 구 위 성 곤 윤 재 갑
이 달 곤 이 양 수 주 철 현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 연 수